직원업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

2018.02.21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직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간 부서사업 결과에 관한 심의
2. 기타 직원 업적평가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가 담당한다.

②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1인을 두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